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2] <개정 2017. 12. 29.>

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(제5조제1항 본문 관련)

1. 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

| 방염물품의 종별 | 표시 양식(단위: ㎜) |
|---|---|
| 합판, 섬유판, 소파·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| |
|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| |

비고

가. 합격표시는 해당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.

나.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.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

| 표시 양식(단위: ㎜) |
|---|
| |

비고: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.